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503 발의연월일: 2021. 7. 14.

발 의 자:태영호・강대식・金炳旭

김석기 · 김상훈 · 김희곤

유경준 · 김도읍 · 박완수

이채익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을 위하여 2021년 기준 1억 3,600 만 달러의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고, 국군부대를 UN의 '레바논 평화유 지군'(UNIFIL)과 '남수단 임무단'(UNMISS)에 파견하고 있음.

이러한 우리나라의 평화유지활동에 대해서 유엔과 현지 정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건지원, 인도주의적 활동 등을 통해 현지 주민들을 친한화(親韓化)하는 성과도 얻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평화유지활동 성과가 우리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고,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기록 등이 제대로 보존·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가 기념관 건립 등 평화유지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평화유지활동의 성과가 온 전하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신설).

법률 제 호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기념사업 등) ① 국가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
- 2.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 3. 교육·홍보 및 학술활동
- 4. 국제교류, 공동조사 등 국내외 활동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념사업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18조(기념사업 등) ① 국가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과 관련 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 2.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 리·전시 및 조사·연구 3. 교육·홍보 및 학술활동 4. 국제교류, 공동조사 등 국내 외 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에 딸린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